



한국관광협회중앙회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'26.4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「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」 지정 신청 접수 안내

1.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2.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(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) 및 제109조의2(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) 관련입니다.
3. 위 호와 관련하여 **'26년도 4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 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'을 위한 신청 접수**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, 귀 협회의 회원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 신청 개요 * 세부사항 [붙임] 참조

- (1) 지정기간 : 2026년 4분기('26.10.1. ~ '26.12.31.)
 - (2) 신청기간 : **'26.9.7.(월) ~ 9.22.(화), 14:00까지**
 - (3) 접 수 처 : 한국관광협회중앙회, 한국호텔업협회,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
 - (4) 참고사항
 - 가격인상 요건 : **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동기 대비 평균 실판매가를 10%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문체부 장관 지정 관광숙박시설**(적용할 숙박요금 기준연도 2024, 2025년 4분기 중 택1)
 - **'26년 3분기 지정시설도 '26년 4분기 지정을 원할 경우, 재신청 필요**
- 나. 관련 문의 :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
- TEL : 02-2079-2461 / Email : kta7485@naver.com

붙임 26.4분기 부가세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 공고문 1부. 끝.

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 장 이 경 수



수신자 전국 시·도 관광협회(17)

전결 09/07

사원 박성현 과장 이민규 국장 강시은 상근부회장 박종달

협조자

시행 관광산업국-505 (2026.09.07) 접수

우 03149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14 (관훈동) 3층 한국관광협회중앙회 / www.ekta.kr

전화 02-2079-2461 전송 02-757-7489 / pshcs0907@ekta.kr / 공개